

19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추가승인(안)에 관한
검 토 보 고 서

사 천 시 의 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1996년도 명시 이월 사업비 추가 승인(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호래

□ 심사경위

- 1995. 12. 20 (시장제출)
- 1995. 12. 23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 회부
- 1995. 12. 26 제 8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 상정

□ 심사근거

- 지방재정법 제 40조 ①항(세출 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심사하게 되는 것임.

□ 주요 내용 (총 16건 3,160,034천원)

- 기계출 승인 : 9건 1,143,034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① 축동면 청사건립	109,520	부지 미확정
② 통합청사 용역	480,000	기본조사 설계용역 중
③ 청닐주거 환경개선지구 도로	191,945	공사미준공으로 보상비 정산불가
④ 중앙상가 도로 개설	119,063	공사미준공으로 보상비 정산불가
⑤ 서부해안도로 개설	44,189	공사미준공으로 보상비 정산불가
⑥ 읍도시계획도로 개설	64,000	도비보조금삭감으로 착공불가
⑦ 통창 - 경남예식장간 도로 개설	46,317	공사미준공으로 보상비 정산불가
⑧ 오지 공영버스 구입	36,000	농어촌버스노선미확정으로대상지미정
⑨ 신수도 시설지구 기본설계 용역	52,000	신수도 삭도설치 용역 중

○ 금회 제출 심사 : 7건 2,017,000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①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	200,000	교부세 연말내시로 연내사업추진불가
②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150,000	" "
③ 쓰레기 소각로 설치	50,000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여부 협의중
④ 쓰레기 매립장 피해마을 소득증대	80,000	사업장 및 사업 미선정
⑤ 화훼 집하장 설치	53,000	공사기간부족으로 연내사업추진불가
⑥ 실내수영장 건립	484,000	부입때입지연 연내 집행불가
⑦ 문화예술회관 건립	1000,000	도비보조금 연말내시 연내집행불가

□ 주요 검토 사항

1.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과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말에 확정내시되어 연도내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2. 쓰레기 소각로설치비 50,000천원(도비 30,000, 시비 20,000)은 지난 5.10 통합 당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7개월이 지나도록 군용 항공기지법 저촉여부를 군부대와 협의중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소극적인 근무자세의 결과이며,
3. 쓰레기 매립장 피해마을 소득 증대 사업비 80,000천원은 95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4. 화훼 집하장 설치비는 총 507,150천원(도비 33,000, 시비 20,000, 자부담 454,150)으로 지난 5.10 통합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월사유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나,
당초 간이집하장 설치계획이었으나 사천화훼 영농조합(대표 심재현)의 뜻에 따라 영구 건물(사천읍 구암리 1679-1 공항입구 부지 23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71평)을 건립키로 변경하여 도로점용허가절차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부담이 89.5%로 너무 많아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우려됨.

5. 실내수영장 건립비 484,000천원은 95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200,000천원, 시설비에 20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제 2회 추경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200,000천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되어 명시이월 요구된 것으로,

1년이 지나도록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동안 부지매입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한해동안 예산 484,000천원이 사장된 결과로밖에 볼수 없음.

□ 종합적인 의견

-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화훼집하장 설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나 ,
-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피해마을 소득증대 사업은 7개월 내지 1년이 지나도록 위치선정조차 되지 않고,
-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1년간의 예산사장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